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30호, 2019. 8. 19.,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02 - 2110 - 19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업의 등록 관련 서식) ①「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공사업 양도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3조의2(공사업 상속신고 관련 서식)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 8. 19.]

제4조(공사업 변경신고 관련 서식)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5조(공사업 폐업신고 관련 서식)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6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관련 서식) ①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용전검사 관련 서식)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부칙 <제30호,2019. 8. 19.>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상 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대표자	(한글) (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해당함)			
이미 취득한 사업	등록한 다른 시설공사업		다른 업종의 등록·신고번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1부 3.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발급번호 포함)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1부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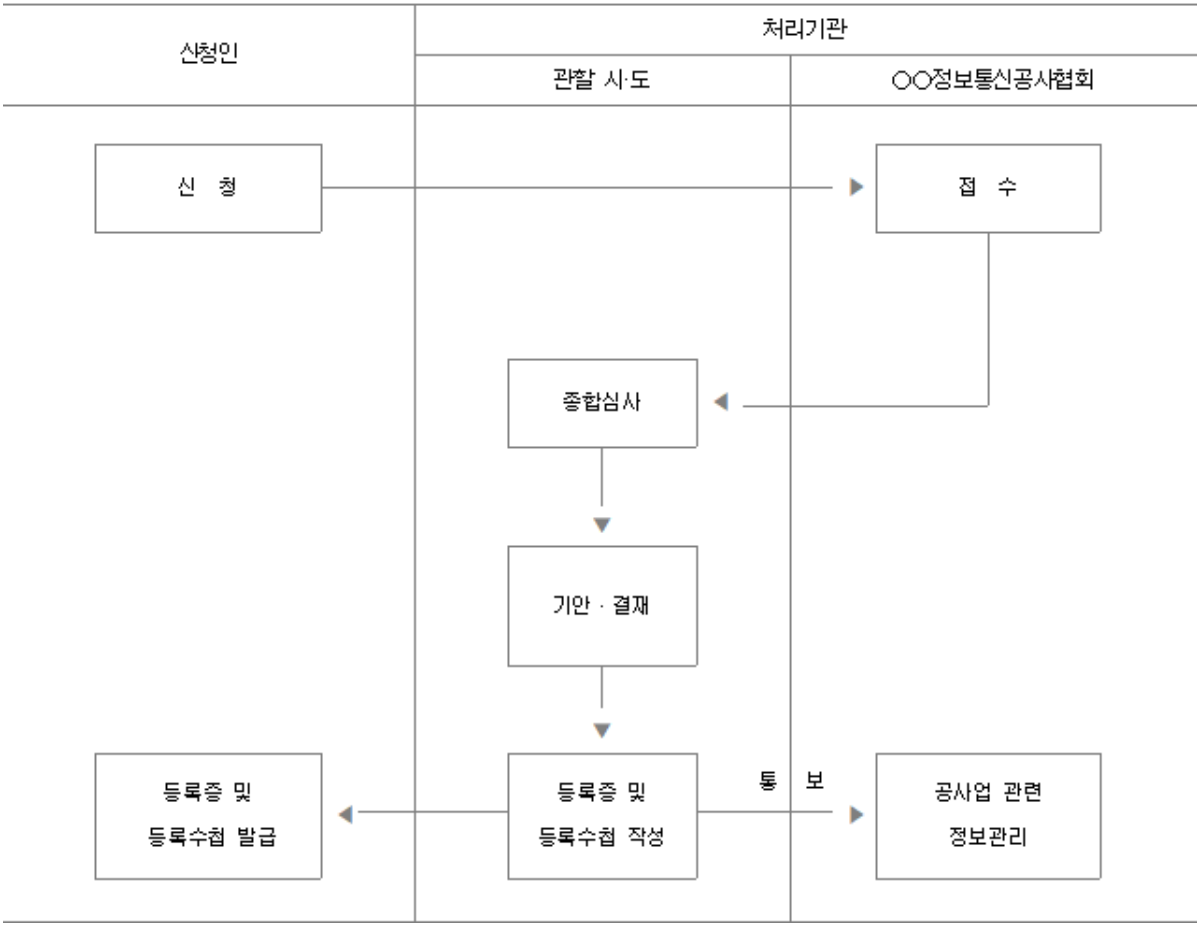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연월일 년 월 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150g/㎡)]

(뒤 쪽)

기재사항 변경			
변경연월일	변경항목	변경된 내용	확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8. 19.>

(표 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ㅇ ㅇ 시·도

145㎜×90㎜[백상지(150g/㎡)]

(제1쪽)

참 고 사 항

1. 이 수첩은 발주자는 물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이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같은 법 제74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이 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 수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145㎜×90㎜[백상지(150g/㎡)]

(제2쪽)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자본금	(천원)
영업소 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145mm×90mm[백상지(80g/㎡)]

▲시공능력 평가사항

(제3쪽)

평가일	평가금액 (천원)	평가액 적용기간	확인	평가일	평가금액 (천원)	평가액 적용기간	확인

145mm×90mm[백상지(80g/㎡)]

▲정보통신기술자 사항 (제4쪽~제11쪽)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또는 경력수첩 번호)	자격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교육이수 연월일	입사		퇴사	
				연월일	확인	연월일	확인

145mm×90mm[백상지(80g/㎡)]

▲변경사항 (제12쪽~제13쪽)

변경연월일	변경항목	변경된 내용	확인

145mm×90mm[백상지(80g/㎡)]

▲행정처분사항 (제14쪽)

연월일	내용	사유	확인

145㎜×90㎜[백상지(15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양도인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글) (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영업소 소재지			
	양수인	상 호		전화번호	
		대표자	(한글) (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번호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영업소 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수수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1부 2. 신고인(양수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3. 기업진단보고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6.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7.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8.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도급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의 경우로서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9.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10.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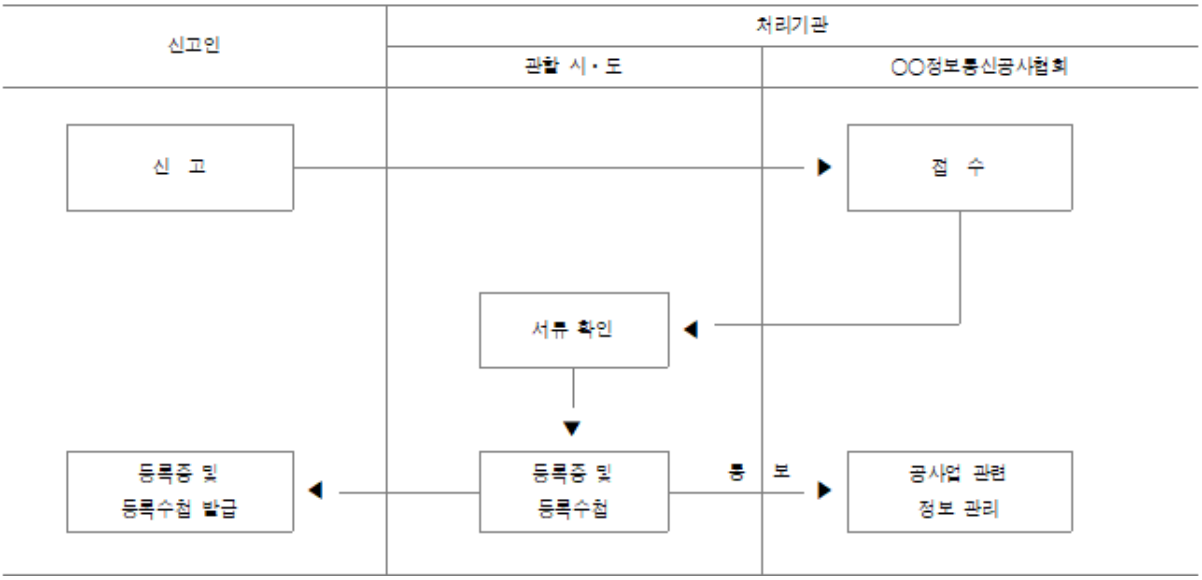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9. 8. 19.>

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 일

피상속인	상 호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번호		사망일자	
	영업소 소재지			
상속인	상 호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 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1부 4. 기업진단보고서 1부 5.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각 1부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7.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8.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5.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보통신기술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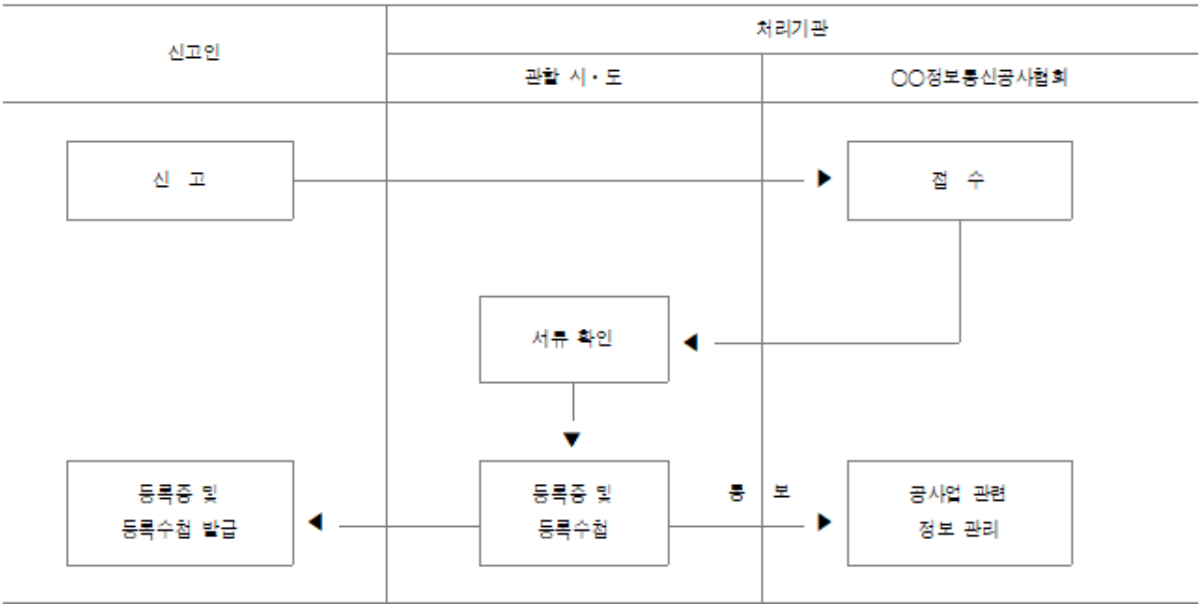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 )
	대표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건축허가번호 (가설건축물만 해당함)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변경항목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공사협회 귀중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변경되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변동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기술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수수료 없 음
위탁기관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호 또는 명칭,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의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정보통신기술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영업소 소재지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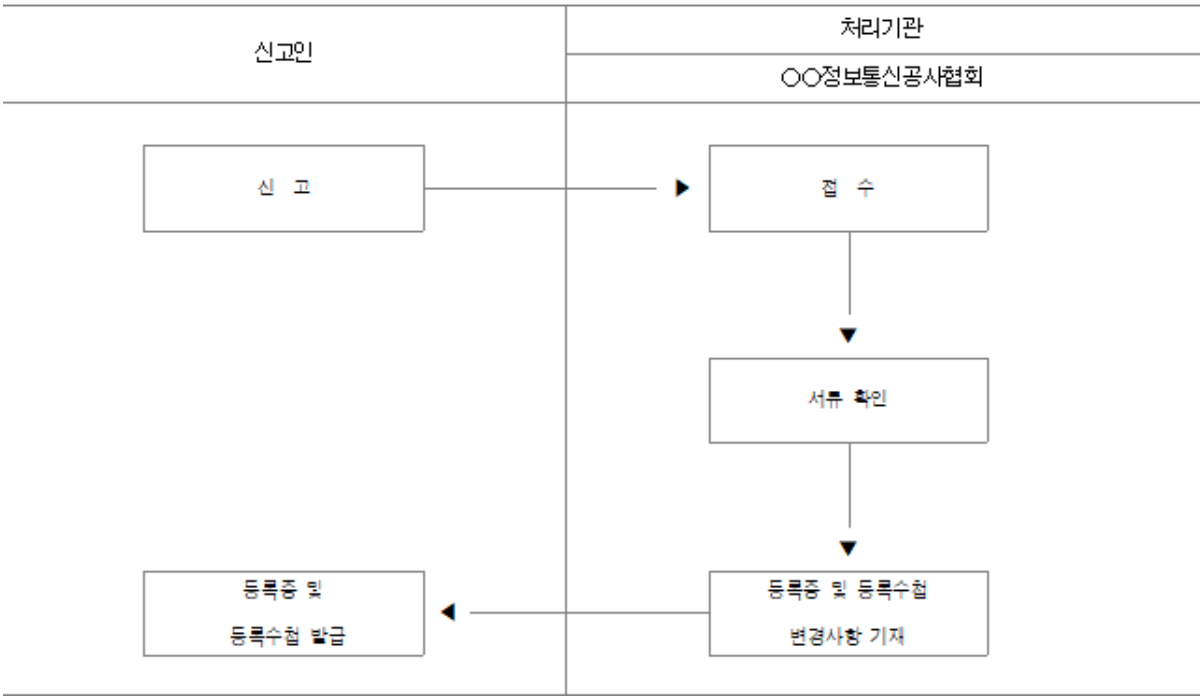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위탁기관 확인사항 중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 호		등록번호	
	대 표 자	(한글) (한자)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폐업연월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폐업사실증명 2. 사업자등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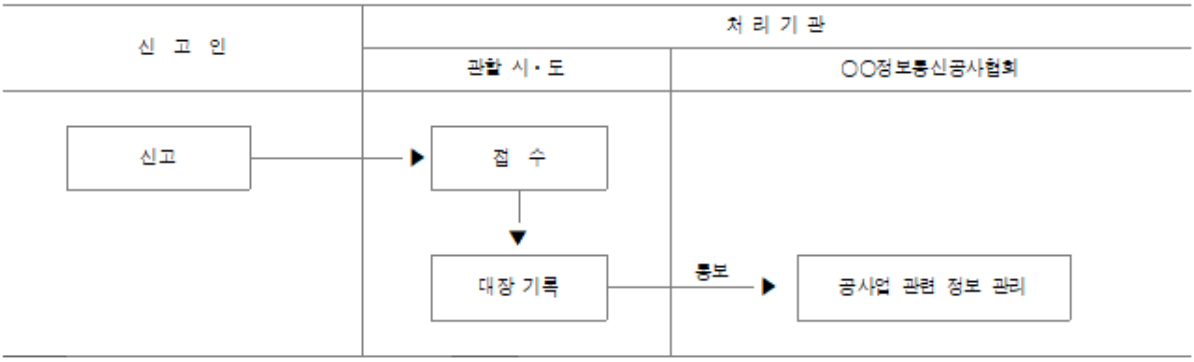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발급번호 :

발주자 (건축주)		전화번호	
주 소			
용역업체		설계자 (연락처)	
주 소			
건축허가 번호		건축현장명 (소재지)	
검토의견			
보완사항			
관련 근거 (기술기준 등)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결과를 통보 합니다.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감리 대상 공사임을 통보합니다.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 또는 감리수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시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으면 재시공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보완 후 착공하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0. 18.>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번호	발주자(건축주)		설계자		건축현장						처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표자	상호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기술사사무소 등록번호)	현장명	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 면적	연면적/ 규모(층수)	접수일	검토자	검토의견	통보서 발급 번호	통보일	

※ "검토의견"란: 적합, 부적합(보완 필요), 감리대상으로 구분 기재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 8. 19.>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주 소			
시공자	상 호		정보통신공사업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전 화 번 호	
	영업소 소재지			

검사현장 명칭			
검사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지상파TV ☐ 위성방송 ☐ FM라디오방송 ☐ 종합유선방송)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__층, 지상__층
착공일	. . .	완공일	. . .
검사희망 연월일	. . .		
사용전검사필증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온라인 발급[민원24아이디(ID):] ※ 아이디(ID): 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작 성 방 법

※ 연면적 :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 기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법령정보센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